

❖ 현장의 수요 및 제도 합리화를 위해 ‘배치전건강진단’ 제도를 **개편**하였는바, **주요 개정사항 및 행정절차 등을 안내**하여 업무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

I 적용기준

- (근거)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[별표 30], 동법 시행규칙 제203조 (배치전건강진단 실시의 면제), 제209조(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등), 제211조 (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), 부칙 제1조 및 제3조
- (실시 인정기간) 배치일이 **‘24.12.29. 이후인** 근로자
- (결과보고/지정한계 추가) 제1차 실시일이 **‘25.1.1. 이후인** 근로자

II 변경내용**1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인정기간 합리화**

<관련 규정 내용> (근거: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3조)

-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해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.
 - 다만, 동일 또는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**인정기간 내** 실시한 **건강진단결과**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- (인정기간) 배치일(진단일 아님)이 **‘24.12.29. 이후인** 경우부터 적용

구분	적용 유해인자	인정기간
1	7종*	6개월 이내 결과
2	그 외 174종	12개월 이내 결과

* 7종: N,N-디메틸아세트아미드, 미메틸포름아미드, 벤젠, 1,1,2,2-테트라클로로에탄, 사염화탄소, 아크릴로니트릴, 염화비닐

- (인정 건강진단결과 종류) 배치전건강진단(유해인자 같음), 배치전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특수·수시·임시건강진단(유해인자 다름)

- 【💡 질의】 '24.12.30. 현장에 배치할 예정인 근로자에 대하여 '24.6월 실시한 건강진단 결과가 있다면 실시를 면제할 수 있는지?

➡ 해당인자 및 해당 기간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면제 가능함

○ (신·구조문 대비표)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

현 행	개 정
<p>제203조(배치전건강진단 실시의 면제) 법 제130조 제2항 단서에서 “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.</p> <p>1.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로서 건강진단 결과를 적은 서류(이하 “건강진단 개인표”라 한다)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</p> <p>가. ~ 다. (생략)</p> <p>2. 해당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</p>	<p>제203조(배치전건강진단 실시의 면제)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(별표 23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유해인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12개월로 한다)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로서 건강진단 결과를 적은 서류(이하 “건강진단개인표”라 한다)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</p> <p>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해당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(별표 23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유해인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12개월로 한다)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</p>
	<p>부칙<고용노동부령 제419, 2024.6.28.>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03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할 날부터 시행하고, 제209조제4항 및 제2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, 제126조제1항제3호, 별표 5 제5호 및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.</p>

2 배치전건강진단 지정한계 인원 추가 및 지정서 재교부

<관련 규정 내용> (근거: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1조)

-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특수건강진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도록 해야 한다.
 1. 의사 1명당 연간 특수건강진단 실시 인원이 1만명을 초과하지 않을 것
 2. 의사 1명당 연간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인원의 합이 1만3천명을 초과하지 않을 것

○ (적용시점) '25.1.1.부터 실시하는 배치전건강진단부터 계산

* 직업환경전문의 1명당 인원 집계

- 1 【💡 질의】 근로자 A가 배치전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을 다른 날짜에 받은 경우 인원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?
 - ➡ 배치전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을 각각 계산
- 2 【💡 질의】 제1차와 제2차 건강진단을 다른 의사가 실시한 경우 인원 계산은?
 - ➡ 배치전 및 특수건강진단은 1명의 의사가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, 부득이 제1차와 제2차를 다른 의사가 실시한 경우에는 각각 연인원에 계산
- 3 【💡 질의】 기관의 지정한계가 2만6천명인 경우 전체 수검인원인 2만6천명만 초과하지 않으면 되는 것인지?
 - ➡ 의사의 연인원은 의사 1명당 제한인원으로 의사 1명당 계산함. 전체 수검인원이 아닌 의사 1명당 수검인원으로 계산하여야 하며, 특수건강진단의 실시인원은 의사 1명당 1만명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
 - * <예시> A의사 1만5천명, B의사 1만1천명 ← (X)
- 4 【💡 질의】 사업 중도에 의사가 추가 채용되거나 변경된 경우 연인원 계산은?
 - ➡ 기관의 지정한계를 초과할 수 없고, 의사 1명당 1만3천명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종전 의사가 실시한 건강진단 수와 변경된 의사가 실시한 건강진단 수를 합하여 지정한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
 - * <예시1> '25.1.1.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곳에서 5.31.까지 A의사가 5천명을 실시한 후 퇴사하고 B의사로 변경된 경우, B의사는 '25.12.31.까지 8천명 수검 가능
 - * <예시2> 검진기관이 '25.5월말 C의사를 추가 채용할 경우, 검진기관은 C의사를 채용한 날로부터 연간 1만3천명까지 수검 가능

○ (지정서 재교부) 개정내용에 따라 지정사항 변경 필요

지정사항	총 업무(지정) 한계	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근로자 (13,000) 명 (의사 1명당 연간 특수건강진단 근로자가 1만명을 초과하지 않을 것)
	관할지역 업무(지정)한계	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근로자 (13,000) 명 (의사 1명당 연간 특수건강진단 근로자가 1만명을 초과하지 않을 것)
	업무(지정)지역	전국

○ (신·구조문대비표)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

현 행	개 정
<p>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[별표 30]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·시설 및 장비 기준</p> <p>1. 인력기준 가. 「의료법」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(2015년 12월 31일 당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특수건강진단업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고 있는 의사를 포함한다. 이하 이 목에서 같다) 1명 이상. 다만, <u>1년 동안 특수건강진단 실시 대상 근로자가 1만명을 넘는 경우에는 1만명마다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를 1명씩 추가한다.</u></p>	<p>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[별표 30]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·시설 및 장비 기준</p> <p>1. 인력기준 가. 「의료법」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(2015년 12월 31일 당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특수건강진단업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고 있는 의사를 포함한다. 이하 이 목에서 같다) 1명 이상. 다만,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를 추가하되, 1) 또는 2)를 적용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추가 인원 수가 각각 같은 경우에는 해당 인원 수를 추가하고, 서로 다른 경우에는 더 큰 인원 수를 추가한다.</p> <p>1) 1년 동안 특수건강진단 실시 대상 근로자의 수가 <u>1만명을 넘는 경우: 근로자 1만명당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1명씩</u></p> <p>2) 1년 동안 특수건강진단 실시 대상 근로자의 수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<u>배치전건강진단 실시 대상 근로자의 수의 합계가 1만 3천명을 넘는 경우: 근로자 1만3천명당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1명씩</u></p>

○ (신·구조문대비표)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

현 행	개 정
<p>제211조(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) ① ~ ④ (생략)</p> <p>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<u>특수건강진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의사 1명당 연간 특수건강진단 실시 인원이 1만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.</u></p> <p>⑥ ~ ⑦ (생략)</p>	<p>제211조(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<u>특수건강진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도록 해야 한다.</u></p> <p>1. <u>의사 1명당 연간 특수건강진단 실시 인원이 1만명을 초과하지 않을 것</u></p> <p>2. <u>의사 1명당 연간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인원의 합이 1만3천명을 초과하지 않을 것</u></p> <p>⑥ ~ ⑦ (현행과 같음)</p> <p>부칙<고용노동부령 제419, 2024.6.28.></p> <p>제3조(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등에 관한 적용례) 제20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<u>2025년 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건강진단</u>부터 적용한다.</p>

3 배치전건강진단 결과 보고<신설>

<관련 규정 내용> (근거: 산업안전보건법 제13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9조)

- 특수건강진단기관이 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(특수·수시·임시·**배치전**)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통보하고, 고용노동부장관(지방관서의 장)에게 보고(제출)하여야 한다.
 - 다만, 건강진단개인표 전산입력자료를 안전보건공단에 송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○ (적용시점) '25.1.1.부터 실시하는 배치전건강진단부터 적용(제1차 검사)

- 1 【💡 질의】 입사전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채용여부를 결정하려 하는데 이 경우 건강진단기관은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지?
 - ▶ 배치전건강진단은 배치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하는 것으로 이를 채용시 건강진단으로 활용하거나,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도구로 활용해서는 안될 것임
 - ▶ 건강진단기관에서는 입사일을 필수로 입력하도록 하고 있고, 검진일은 입사일 이후로 설정되어 있는바, 검진일이 입사일을 앞설 경우 결과 송부가 안되어 진단기관에 불이익(행정처분)이 발생할 수 있음
- 2 【💡 질의】 외국인등록번호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신규 발급예정자일 경우 진단 결과는 어떻게 전송하는지?
 - ▶ 안전보건공단 K2B 시스템을 통하여 임시번호를 발급받아 건강진단 결과를 전송할 수 있음. 자세한 사항은 K2B 시스템(www.k2b.kosha.or.kr) 공지사항 "외국인 등록번호 오류 및 발급예정자의 건강진단 결과 전송방법 안내" 참고

○ (신·구조문대비표)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

현 행	개 정
<p>제209조(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등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특수건강진단기관은 특수건강진단·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 결과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다만, 건강진단개인표 전산입력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송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</p> <p>⑤ (생략)</p>	<p>제209조(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특수건강진단·배치전건강진단·수시건강진단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